

## 대외교류 및 협력에 관한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루터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대외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①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(2017.4.21.개정)

1. 학교법인 루터교학원 및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와의 거버넌스 구축, 운영
  2.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, 협력에 관한 사항
  3. 국내외 기관 및 시설 등과의 교류, 협력에 관한 사항
  4. 교직원의 국내외 단기연수, 방문 및 견학 등에 관한 사항
  5. 지역사회와의 연계, 협업 및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
  6. 기타 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
- ② 학점교류 및 외국대학 교환 학생에 대한 규정은 「경인지역 대학교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」, 「외국대학 교환 학생에 대한 규정」, 「국내외 대학간 학점교류 인정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

**제3조(위원회)** ① 대외교류 및 협력에 관련된 사항은 교무위원회를 통해 심의한다.

② 교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교무위원회 규정」을 따른다.

**제4조(협정체결권자)** 국내외 대학 및 기관, 시설 등과 교류협정을 체결할 경우 협정의 체결은 총장이 행한다. 다만, 총장의 위임을 받은 자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.

**제5조(협정체결절차)** ① 국내외 대학 및 기관, 시설 등과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협정 체결 추진부서는 목적, 대상기관, 협정내용, 협정서 등 구체적인 협정추진계획서를 교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토록 한다.

② 협정추진계획서가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 당해부서는 대외홍보처의 협조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사안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해부서장이 대외홍보처의 협조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추진을 할 수 있다.

**제6조(준용규정)**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